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내용	업종	주생산품명						
	설치예정일	가동개시예정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생산공정	배출시설명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	설비용량	수량	방지시설명	설비용량	수량
	일일조업 시간(연간 가동일)	대기오염물질 종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배출계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귀하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1.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운영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2.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3.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4. 사업장의 배치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용량·수량 등을 적고, 원료와 원료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해야 합니다) 5.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공정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적어야 합니다) 6.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공정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7.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 신고 대상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갈음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50,000원
------	--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설치허가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신고인	